문화예술단체를 위한

국제교류 조세제도 해설집

(하)

Contents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국제교류 조세제도 해설집」 이용안내

상 Ⅰ. 조세조약이란? ····· 9
1. 조세조약 체결 목적 ····· 10
2.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관계 ····· 10
3. 조세조약의 적용 ····· 11
4. 조세조약의 구성 체계 ····· 12
5.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체결 현황 ····· 13

Ⅱ. 조세조약과 국내 과세제도 ····· 15
1. 개요 ····· 16
2. 공연예술분야 국제교류 관련 과세제도 ····· 26
3. 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 세율 계산 ····· 41

Ⅲ. 국가별 조세조약 분석 ····· 46
1. 그리스 ····· 48
2. 남아프리카공화국 ····· 52
3. 네덜란드 ····· 57
4. 네팔 ····· 63
5. 노르웨이 ····· 68
6. 뉴질랜드 ····· 74
7. 덴마크 ····· 80
8. 독일 ····· 85
9. 라오스 ····· 90
10. 러시아 ····· 95
11. 루마니아 ····· 100
12. 룩셈부르크 ····· 104
13. 리투아니아 ····· 109
14. 말레이시아 ····· 114
15. 멕시코 ····· 121
16. 모로코 ····· 126
17. 몰타 ····· 130
18. 몽골 ····· 136
19. 미국 ····· 140

20. 미얀마 ····· 148
21. 방글라데시 ····· 153
22. 베네수엘라 ····· 160
23. 베트남 ····· 165
24. 벨라루스 ····· 169
25. 벨지움 ····· 174
26. 불가리아 ····· 179
27. 브라질 ····· 185
28. 사우디아라비아왕국 ····· 191
29. 스리랑카 ····· 196
30. 스웨덴 ····· 201
31. 스위스 ····· 206
32. 스페인 ····· 211
33. 슬로바크 ····· 215
34. 슬로베니아 ····· 219
35. 싱가폴 ····· 225
하 36. 아랍에미리트연합 ····· 230
37. 아이슬란드 ····· 235
38. 아일랜드 ····· 240
39. 아제르바이잔 ····· 246
40. 알바니아 ····· 251
41. 알제리 ····· 256
42. 영국 ····· 261
43. 오만 ····· 265
44. 오스트리아 ····· 269
45. 요르단 ····· 275
46. 우즈베키스탄 ····· 280
47. 우크라이나 ····· 285
48. 이스라엘 ····· 289
49. 이집트 ····· 293
50. 이태리 ····· 298
51. 인도 ····· 302
52. 인도네시아 ····· 309
53. 일본 ····· 314

54. 중국 ····· 319
55. 체코 ····· 323
56. 칠레 ····· 327
57. 카자흐스탄 ····· 333
58. 캐나다 ····· 337
59. 쿠웨이트 ····· 342
60. 크로아티아 ····· 348
61. 태국 ····· 352
62. 터어키 ····· 358
63. 튀니시아 ····· 363
64. 파키스탄 ····· 369
65. 파푸아뉴기니아 ····· 376
66. 포르투갈 ····· 381
67. 폴랜드 ····· 386
68. 프랑스 ····· 392
69. 핀랜드 ····· 397
70. 필리핀 ····· 402
71. 헝가리 ····· 407
72. 호주 ····· 411
73. 휘지 ····· 416

IV. Q&A ····· 423

V. 부록 ····· 429
1. 조약의 유형과 명칭 ····· 430
2. 문화협정 및 문화공동위 ····· 432
3. 외국인의 한국 사증발급 ····· 435
4. 비거주자 관련법 ····· 444

Ⅲ. 국가별 조세조약 분석

이용자를 위하여

상
1. 그리스
2. 남아프리카공화국
3. 네덜란드
4. 네팔
5. 노르웨이
6. 뉴질랜드
7. 덴마크
8. 독일
9. 라오스
10. 러시아
11. 루마니아
12. 룩셈부르크
13. 리투아니아
14. 말레이시아
15. 멕시코
16. 모로코
17. 몰타
18. 몽골
19. 미국
20. 미얀마
21. 방글라데시
22. 베네수엘라
23. 베트남
24. 벨라루스
25. 벨지움
26. 불가리아
27. 브라질
28. 사우디아라비아왕국
29. 스리랑카
30. 스웨덴
31. 스위스
32. 스페인
33. 슬로바크
34. 슬로베니아
35. 싱가폴

하
36. 아랍에미리트연합
37. 아이슬란드
38. 아일랜드
39. 아제르바이잔
40. 알바니아
41. 알제리
42. 영국
43. 오만
44. 오스트리아
45. 요르단
46. 우즈베키스탄
47. 우크라이나
48. 이스라엘
49. 이집트
50. 이태리
51. 인도
52. 인도네시아
53. 일본
54. 중국
55. 체코
56. 칠레
57. 카자흐스탄
58. 캐나다
59. 쿠웨이트
60. 크로아티아
61. 태국
62. 터어키
63. 튀니시아
64. 파키스탄
65. 파푸아뉴기니아
66. 포르투갈
67. 폴랜드
68. 프랑스
69. 필리핀
70. 핀랜드
71. 헝가리
72. 호주
73. 휘지

36. 아랍에미리트연합 (UNITED ARAB EMIRATES)

‖ 조약체결일 : 2003. 9. 22 ‖ 조약발효일 : 2005. 3. 9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 양국 정부간 합의된 문화교류 협정에 의하여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 아랍에미리트연합 정부의 후원을 받거나, 한국 또는 아랍에미리트연합의 공공기금이 지원되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한국에서]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개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 체약국 정부간 합의되는 문화교류 특별프로그램에 따라서 수행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그러한 활동이 일방체약국 정부의 후원하에 또는 양 체약국의 공공기금 지원하에 비영리목적으로 수행된 경우 상호간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7 Artists And Sportsmen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come derived from such activities perform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ultural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 Contracting State are reciprocally exempted form tax only if such activities are sponsored by the Governm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financed by public fund of both Contracting States and the activities are not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profits.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아랍에미리트의 거주자인가?
  - ⇓ 예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 예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만 적용)
  - 개인 ⇒ ▪ 아랍에미리트의 개인이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한국에서]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법인 ⇒ ▪ 아랍에미리트의 법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소득 조항 적용)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그 밖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개인이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 안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갖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한다. 만약 동 개인이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 변호사 · 엔지니어 · 건축가 ·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 · 문학 · 예술 · 교육과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 ● 제한세율 : 없음.

※ 단, 고정사업장과 관련 있는 경우 법인의 경우 제7조 개인의 경우 제14조의 적용 받아 과세됨

● ●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필름작업,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과 관련된 테이프 또는 그 밖의 재생수단을 포함하여, 문학적 · 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이나 특허권 · 상표권 · 의장 · 신안 · 도면 ·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노우하우)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인이 일방체약국 안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 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5. 사용료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동 사용료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37. 아이슬란드 (THE REPUBLIC OF ICELAND)

‖ 조약체결일 : 2008. 5. 15 ‖ 조약발효일 : 2008. 10. 23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아이슬란드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양국 정부간 합의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의하여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연예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 · 영화 · 라디오 ·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개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예능인이나 체육인이 그 자격으로 수행하는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된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 간에 합의된 문화교류 특별프로그램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다른 쪽 체약국으로부터 조세가 면제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s or sportsmen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under a special programme of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both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아이슬란드의 의 거주자인가?
  -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만 적용)
  - 개인 ⇒ ■ 아이슬란드의 개인이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 법인 ⇒ ■ 아이슬란드의 법인이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그 밖의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가 아니면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한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 변호사 · 엔지니어 · 건축가 ·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 · 문학 · 예술 · 교육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 ● 제한세율 : 10%(주민세 포함)

● ●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하여 문학적 · 예술적 ·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식,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 산업적 · 상업적 ·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 산업적 · 상업적 ·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사용권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가 어느 한쪽 체약국에 사용료를 지급할 책임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사용료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그 밖의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

된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38. 아일랜드 (IRELAND)

‖ 조약체결일 : 1990. 7. 18 ‖ 조약발효일 : 1991. 12. 27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아일랜드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아일랜드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어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공공기금 출처 :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법정 기구
    - 지원범위 : 실질적으로
    - 예 → 인적용역 검토
    - 아니오 → 한국에서 과세
  - ⇒ ■ 아일랜드의 비영리단체에게 지급되는 경우
    - 예 → 인적용역 검토
    - 아니오 → 한국에서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인 경우 (2)검토
- 종속적 인적용역인 경우 (3)검토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및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과 같은 연예인 또는 음악가 또는 기자, 축구선수, 골프선수, 스누커선수, 카드선수

또는 권투선수와 같은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개인이든지 또는 그룹 구성원으로서 든지 관계없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의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사업이윤),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및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은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들의 일방체약국 방문이 실질적으로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법적 단체의 공공기금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들에 의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 또는 이윤, 급료, 임금 및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또한 비영리 조직의 소득의 어떠한 부분도 그것의 소유자, 구성원 또는 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지급되거나 달이 이용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비영리 조직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 17 Entertainers and Sportsmen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0 and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s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such as an athlete, footballer, golfer, snooker player, card player or boxer,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hether individually or as a member of a group,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Business Profits),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and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to remuneration or profits, salaries, wages and similar income derived from activities performed in a Contracting State by entertainers or athletes if their visit to that State is substantially supported from the public fund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those of any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nor to income derived by a non-profit making organization in respect of such activities provided no part of its income is payable to, or is otherwise available for the personal benefit of its proprietors, members or shareholders.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아일랜드의 거주자인가?
  -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 ⇒ ■ 아일랜드의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한국에서]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당해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단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외과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회계사 및 수의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surgeo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ccountants and veterinary practitioners.

(3) 종속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아일랜드 법인(단체)의 근로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종속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아일랜드의 거주자가 당해 회계연도 중에 총 183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예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면세
  - ⇒ ▪ 아일랜드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한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될 경우
    - 예 과세
    - 아니오 면세
  - ⇒ ▪ 아일랜드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한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될 경우
    - 예 과세
    - 아니오 면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5 조 종속적 인적 용역

1. 제16조(이사의 보수),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제19조(정부용역) 및 제21조(교수 및 교사)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다만,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그리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그리고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내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Directors' Fees), 18 (Pensions and Annuities), 19 (Government Service) and 21 (Professors and Teachers),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4)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 ● 제한세율 : 0%

※ 단, 고정사업장과 관련 있는 경우 법인의 경우 제7조 개인의 경우 제14조의 적용 받아 과세됨

● ●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취득되고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된다.
2.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영화 또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테이프 또는 기타 미디어상의 녹음 또는 기타의 재생수단 또는 전송수단을 포함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3. 본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사업이윤) 또는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의 규정이 적용된다.
4. 사용료는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위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5.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어떠한 이유로든지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39. 아제르바이잔 (THE REPUBLIC OF AZERBAIJAN)

‖ 조약체결일 : 2008. 5. 19 ‖ 조약발효일 : 2008. 11. 25

(1) 공연료(performance fee)

- 인적용역 제공자가 아제르바이잔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한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어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공공기금 출처 :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법정기구
    - 지원범위 : 실질적으로
    - 예 → 인적용역 검토
    - 아니오 → 한국에서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인 경우 (2)검토
- 종속적 인적용역인 경우 (3)검토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 · 영화 · 다종다양공연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배우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어느 한쪽 체약국에 대한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방문이 행정구역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정기구를 포함하는 다른 쪽 체약국의 공공 기금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동 연예인이

나 체육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보수 또는 이윤, 급료, 임금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variety,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to remuneration or profits, salaries, wages and similar income derived from activities performed in a Contracting State by entertainers or athletes if their visit to that State is substantially supported from the public fund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those of any administrative-territori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독립적 인적용역 제공자가 아제르바이잔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만 적용)
  - 개인
    - ⇒ ■ 아제르바이잔의 개인이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국에서]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아제르바이잔의 개인이 당해 역년 중 183일 이상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당해 역년 어느 12개월 내에 체제시작일이나 종료일이 포함되는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법인
    - ⇒ ■ 알바니아의 법인이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소득 조항 적용)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그 밖의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소득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과세 가능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그러한 경우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한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또는,

나. 그가 당해 역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월의 기간 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에 한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 변호사 · 엔지니어 · 건축가 · 치과의사 · 회계사 및 감사역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 · 문학 · 예술 · 교육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except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when such income may also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If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If his sta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s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calendar year concerned;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derived from his activities performed in that other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ccountants and auditor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 ● 제한세율 : 10%(주민세 포함)

● ●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특허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대한 정보에 대해 지급되는 사용료는 지급총액의 5퍼센트

나. 그 밖의 사용료는 지급총액의 10퍼센트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하는 문학, 예술 또는 과학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경험(노하우)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에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 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7. 이 조의 규정은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의 창설 또는 할당에 연관된 인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그러한 창설 또는 할당에 의해 이 조항을 이용하는 것이었다면 적용되지 아니한다.

40. 알바니아 (THE REPUBLIC OF ALBANIA)

‖ 조약체결일 : 2006. 5. 17 ‖ 조약발효일 : 2007. 1. 13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알바니아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양국 정부간 합의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의하여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영화라디오나 텔레비전의 배우나 음악가 등의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 그 자체로서 얻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에게 발생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발생되는 경우에 그 소득은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간에 합의된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 얻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PERSON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perso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perso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perso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person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s or sportspersons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under a special programme of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both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알바니아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만 적용)

개인

⇒ ▪ 알바니아의 개인이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국에서]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 알바니아의 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183일 이상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당해 역년 어느 12개월 내에 체제시작일이나 종료일이 포함되는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법인

⇒ ▪ 알바니아의 법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소득 조항 적용)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그 밖의 활동으로 얻는 소득은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그러한 소득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한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그가 당해 회계연도에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12월중 총 183일에 해당하는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변호사기사건축가회계감사관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except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when such income may also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if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or

b) if his sta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s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12-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calendar year concerned;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derived from his activities performed in that other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dentist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auditor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 ● 제한세율 : 10%(주민세 포함)

● ●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한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

만,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사용료가 발생한 체약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를 통하여 이러한 과세한도의 적용방법을 정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 ·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 상표권 · 의장 · 신안 · 도면 · 비밀공식 또는 공정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리의 대가, 산업적 · 상업적 및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당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가 그 어느 한쪽 체약국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당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사용료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사용료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41. 알제리 (POPULAR REPUBLIC OF ALGERIA)

‖ 조약체결일 : 2001. 11. 24 ‖ 조약발효일 : 2006. 8. 31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알제리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양국 정부간 합의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의하여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 영화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배우 또는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이나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 자격으로 수행하는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소득은 제7조 ·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의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특별프로그램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동 타방국에서 면세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s or sportsmen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under a special programme of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both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알제리의 거주자인가?
  -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 ⇒ ▪ 알제리의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국에서]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알제리의 거주자가 당해 회계연도 중에 총 183일 이상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 활동의 수행목적상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또는
   나. 동 거주자가 당해 회계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이 경우 타방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의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 변호사 · 엔지니어 · 건축사 ·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 · 문학 · 예술 ·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except:
   (a) If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If his sta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s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derived from his activities performed in that other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 ● 제한세율 : 10%(주민세 포함)

● ●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각목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에는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 ·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 · 예술적 ·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체,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그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동 사용료가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의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42. 영국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LRELAND)

‖ 조약체결일 : 1996. 10. 25 ‖ 조약발효일 : 1996. 12. 29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영국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양국 정부간 합의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의하여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이 협약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 영화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이 협약 제7조 ·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 문화교류계획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of this Convention,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of this Convention,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s or sportsmen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from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under a special programme of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both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영국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 ⇒ ▪ 영국의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한국에서]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여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 안에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득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 변호사 · 엔지니어 · 건축사 · 치과의사와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 · 문학 · 예술 ·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제한세율 : 10%(주민세 포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 ·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 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또는 신안) · 도면 · 비밀공식(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7. 이 조의 규정은, 사용료의 지급과 관련된 권리의 창설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동 창설 또는 양도에 관련된 어떤 인의 주된 목적이거나 주된 목적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 조 제7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의 경감이 부인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통보한다.

43. 오만 (SULTANATE OF OMAN)

‖ 조약체결일 : 2005. 9. 23 ‖ 조약발효일 : 2006. 2. 13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오만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오만의 공공기금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공공기금 출처 : 정부, 법정기구
    - 지원범위 : 전적으로, 주로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 · 영화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으로의 방문이 타방체약국의 공공기금 또는 법령조직으로부터 전부 또는 주로 후원을 받는 경우, 동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Income deriv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from activities exercised in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State, if the visit to that State is supported wholly or mainly by public fund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a statutory body thereof.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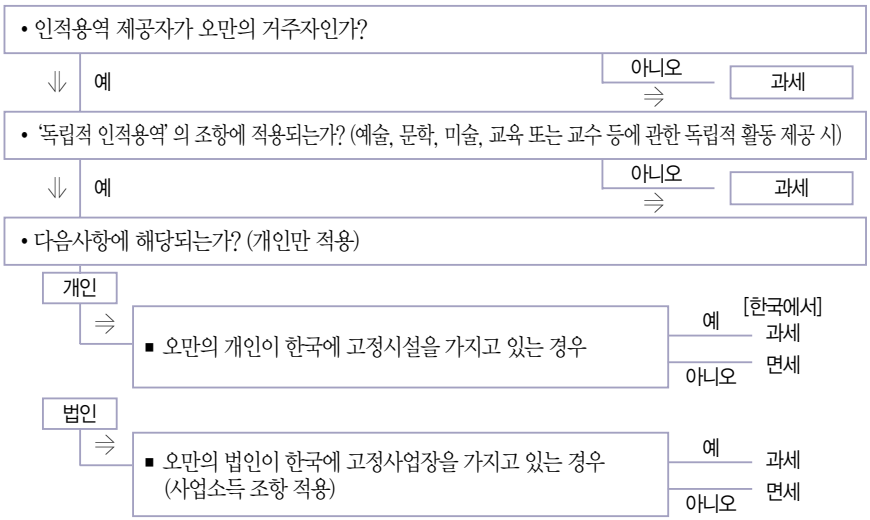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그 밖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개인이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 내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개인이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 변호사 · 엔지니어 · 건축가 ·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 · 문학 · 예술 ·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제한세율 : 8%(주민세 포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한 타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과세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8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을 위해 사용하는 테이프 또는 레코드를 포함하여, 문학 · 예술 또는 과학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받는, 또는 산업상업 또는 학술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받는, 또는 산업상업 또는 학술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동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가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일방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사용료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동 사용료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7. 그 사용료의 원인인 권리의 형성 또는 양도와 관련된 사람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들 중 하나가 그러한 형성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4. 오스트리아 (THE REPUBLIC OF AUSTRIA)

‖ 조약체결일 : 2001. 5. 28 (개정) ‖ 조약발효일 : 2002. 3. 30 (개정)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오스트리아의 거주자인가?		
⇓ 예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아니오 ⇒	과세
• 면세조항 없음.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 14조 및 제 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그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의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제 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 7조, 제 14조 및 제 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은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오스트리아의 거주자인가?
  -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만 적용)
  - 개인
    - ⇒ ▪ 오스트리아의 개인이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오스트리아의 개인이 당해 과세연도 중에 총 183일 이상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법인
    - ⇒ ▪ 오스트리아의 법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소득 조항 적용)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002. 3. 30 개정)

가. 동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안에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동고정시설에 귀속될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또는

나. 수취인이 당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2. "전문직업적 용역"이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except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when such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if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State; or
   b) if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taxable year concerned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종속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오스트리아 법인(단체)의 근로자인가?
  - 예 ⇓
  - 아니오 ⇒ 국내기준 적용
- '종속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 예 ⇓
  - 아니오 ⇒ 국내기준 적용
- 다음사항에 모두 해당되는가?
  - ⇒
    - 오스트리아의 거주자가 회계연도 중에 총 183을 이상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오스트리아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한국의 비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될 경우
    - 오스트리아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한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될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한국에서] 면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5 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제 16조, 제 18조, 제 19조 및 제 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리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내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and 20,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4)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 ● 제한세율 : 10%(주민세 포함)

● ●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2002. 3. 30 개정)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거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또는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

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의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액수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45. 요르단 (JORDAN)

‖ 조약체결일 : 2004. 7. 24 ‖ 조약발효일 : 2005. 3. 28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요르단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양국 정부간 합의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의하여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 · 영화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개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간 합의되는 문화교류 특별프로그램에 따라서 수행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조세가 면제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er,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s or sportsmen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under a special programme of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both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요르단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 ⇒ ▪ 요르단의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한국에서]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요르단의 거주자가 당해 회계연도 중에 총 183일 이상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그 밖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가. 그 개인이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단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당해 회계연도 중 도합 183일 이상인 경우, 단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 변호사 · 엔지니어 · 건축가 ·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 · 문학 · 예술 · 교육과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except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when such income may also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If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If his sta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s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derived from his activities performed in that other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 ● 제한세율 : 10%(주민세 포함)

● ●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제3항에 정의된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하여 문학적 · 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이나 특허권 · 상표권 · 의장 · 신안 · 도면 ·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과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권 및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사용권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인이 일방체약국 안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 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사용료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동 사용료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46. 우즈베키스탄 (REPUBLIC OF UZBEKISTAN)

‖ 조약체결일 : 1998. 2. 11 ‖ 조약발효일 : 1998. 12. 25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우즈베키스탄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 우즈베키스탄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어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 공공기금 출처 : 우즈베키스탄, 한국의 정부, 지방지치단체
      - – 지원범위 : 완전히
    - ▪ 양국 정부간 합의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의하여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 영화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으로서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되고 일방 또는 양체약국과 지방정부의 공공기금에 의하여 완전히 지원되는 문화교류 특별프로그램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s or sportsmen,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under a special programme of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both Contracting States and completely supported by the public fund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and local authoriti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우즈베키스탄의 거주자인가?
  -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 ⇒ ▪ 우즈베키스탄의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우즈베키스탄의 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183일 이상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 당해 역년 어느 12개월 내에 체제시작일이나 종료일이 포함되는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소득이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되는 다음 상황을 제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가 그의 활동 수행 상 그 타방체약국 안에 그에게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당해 소득 중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그가 당해 역년에서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월의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총 기간동안 타방국 안에 체재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당해 소득 중 당해 연도에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그의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 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 변호사 · 기사 · 건축사 · 치과의사 ·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 문학 · 예술 · 교육 ·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except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when such income may also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if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or
   b) if his sta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s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12-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calendar year concerned;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derived from his activities performed in that other State in the year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 ● 제한세율 : 5%(주민세 포함)

● ●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산업적 · 상업적 ·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불한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 ·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 테이프를 포함하여 문학 · 예술 · 학술작품의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 · 의장이나 신안 · 도면 ·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설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지급인이 그 체약국의 거주자일 때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떤 체약국 안에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7. 이 조의 규정은 이 조의 혜택을 향유하는 것이 사용료가 지급되는 권리의 창설 또는 양도와 관련된 자의 주목적 또는 주목적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이 조 적용에 관한 의사결정 전에 타방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47. 우크라이나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 조약체결일 : 1999. 9. 29 ‖ 조약발효일 : 2002. 3. 19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우크라이나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양국 정부간 합의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의하여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 또는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다른 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 ·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문화교류계획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s or sportsmen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under a special programme of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both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우크라이나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 ⇒ ▪ 우크라이나의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인이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사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제한세율 : 5%(주민세 포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러한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영화 필름, 또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다)의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 · 의장 또는 모형 도면 비밀공식

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6. 이 조의 규정은, 사용료의 지급과 관련된 권리의 창설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동 창설 또는 양도에 관련된 어떤 인의 주된 목적이거나 주된 목적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 그 정치적 하부조직 ·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48. 이스라엘 (THE STATE OF ISRAEL)

‖ 조약체결일 : 1997. 3. 18 ‖ 조약발효일 : 1997. 12. 13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이스라엘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양국 정부간 합의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의하여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이 협약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예능인 또는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으로서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그의 자격으로 수행하는 인적 활동에 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다른 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소득은 이 협약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문화교류계획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s or sportsmen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under a special programme of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both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이스라엘의 거주자인가?
  -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 ⇒ ■ 이스라엘의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다른 활동에 관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거주자가 그 활동 수행의 목적상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되는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와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dentist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제한세율 : 5%(주민세 포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나, 사용료의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을 포함하는 문학 예술 또는 학술상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노우하우,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 동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가 동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동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 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중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된다.

49. 이집트 (ARAB REPUBLIC OF EGYPT)

‖ 조약체결일 : 1992. 12. 9 ‖ 조약발효일 : 1994. 2. 5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이집트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이집트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어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 공공기금 출처 :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 – 지원범위 : 실질적으로
    - [한국에서] 예 → 면세 / 아니오 → 과세
  - ⇒ ▪ 이집트의 비영리단체에게 지급되는 경우
    - 예 → 면세 / 아니오 →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 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의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타인이 동 연예인 또는 체육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되고 있으면,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은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예인 또는 체육인에게 일방체약국에서 그러한 그의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만약 그의 일방체약국 방문이 타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자격으로서 인적 용역에 관련된 소득이 동 연예인 또는 운동가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동인이 타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거나 동인이 타방체약국의 비영리 단체인 경우에는 동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income deriv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in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his visit to the first mentioned State is supported substantially from the public funds of that other State or of one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4.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as such of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a Contracting State accrues not to that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is person is supported substantially from the public funds of that other State or if this person is a non-profit organization of that other State.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이집트의 거주자인가?
  -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 ⇒ ▪ 이집트의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한국에서] 면세
  - ⇒ ▪ 이집트의 거주자가 당해 과세연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한국에서]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의 독립적인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상 타방체약국내에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동인이 당해 과세년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재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인이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상기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그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거나 상기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과세된다.
2. "전문직업적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 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or he is present within that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taxable year concerned. If he has such a fixed base or remains in that other State for the aforesaid period or periods,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or is derived in that other State during the aforesaid period or periods.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by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 ● 제한세율 : 15%(주민세 포함)

● ●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 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 특허권 · 상표 · 의장이나 모델 · 도면 ·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을 포함하여 문학적 · 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의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지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대로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또는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 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기타 제반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50. 이태리 (THE REPUBLIC OF ITALY)

‖ 조약체결일 : 1989. 1. 10 ‖ 조약발효일 : 1992. 7. 14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이태리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이태리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어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공공기금 출처 : 정부, 정치 · 행정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 지원범위 : 실질적으로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 영화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그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의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하는 인적활동에 관한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능인 및 체육인이 일방체약국에서 그의 그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 대한 그의 방문이 타방체약국, 그 정치적, 행정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공기금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income deriv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in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his visit to the first-mentioned State is supported substantially from the public funds of that other State or of one of its political or administrative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이태리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 ⇒ ▪ 이태리의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이태리의 거주자가 당해 회계연도 중에 총 183일 이상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가 그의 활동 수행목적상 동 타방체약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또는
   나. 그가 당해 회계년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중 동 타방국내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except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when such income may also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If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n the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hat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If his sta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s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derived from his activities performed in that other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 ● 제한세율 : 10%(주민세 포함)

● ●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텔레비전이나 방송용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수행하고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행정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지급된 사용료의 액수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51. 인도 (THE REPUBLIC OF INDIA)

‖ **조약체결일** : 1985. 7. 19 ‖ **조약발효일** : 1986. 8. 31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인도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인도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어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공공기금 출처 :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 지원범위 : 실질적으로
    - 예 → 인적용역 검토
    - 아니오 → 한국에서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인 경우 (2)검토
- 종속적 인적용역인 경우 (3)검토

관련 조항 전문

제 18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 영화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그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그의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동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고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은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된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일방체약국 방문이 실질적으로 타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동 연예인 또는 체육인에 의해 동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 또는 이윤, 급료, 임금 및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18 ARTISTES AND ATHLETE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to remuneration or profits, salaries, wages and similar income derived from activities performed in a Contracting State by entertainers or athletes if their visit to that State is substantially supported from the public fund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인도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만 적용)
  - 개인 ⇒
    - ■ 인도의 개인이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국에서]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법인 ⇒
    - ■ 인도의 법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소득 조항 적용)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5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인 용역이나 유사한 성격의 기타 독립적 활동과 관련하여 얻는 소득은 만약 거주자가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인 용역"이라 함은 내과의사, 외과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5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performance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independent activities of a similar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surgeo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종속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인도 법인(단체)의 근로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종속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인도의 거주자가 저년도 또는 과세연도 중에 총 183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인도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한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될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인도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한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될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6 조 종속적 인적 용역

1.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그 수취인이 "전년도" 또는 "과세년도"에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해서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가 고용주가 타방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해서 부담되지 않는 경우

Article 16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7, 19, 20, 21 and 22,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previous year" or "taxation year" concerned, as the case may be;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4)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 ● 제한세율 : 15%(주민세 포함)

● ● ● 관련 조항 전문

제 13 조 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들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라디오 또는 텔레비죤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 또는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댓가로서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라 함은 기술자 또는 기타 직원의 용역제공을 포함하는 경영, 기술, 상담성격의 용역에 대한 댓가로서 어느 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단 그러한 지급을 하는 인의 피고용인에 대한 지급금과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댓가로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지급금을 제외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시설로부터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재산 또는 계약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6.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 또는 기술용

역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이 그들의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52. 인도네시아 (THE REPUBLIC OF INDONESIA)

‖ 조약체결일 : 1988. 11. 10 ‖ 조약발효일 : 1989. 5. 3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인도네시아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양국 정부간 합의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의하여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 14조 및 제 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그러한 그의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그러한 활동이 수행되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활동이 양 체약국의 정부간에 합의되는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계획에 따라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그러한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제 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 7조, 제 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소득이 양 체약국의 정부간에 합의되는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계획에 따라서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

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발생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다른 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소득은 동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s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Such income shall, however,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f such activities are exercised by an individual, being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pursuant to a special programme for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two Contracting States.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as such of an entertainer or athlete accrues not to that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Such income shall, however, be exempt from tax in that Contracting State if such income is derived from the activities exercised by an individual, being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pursuant to a special programme for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two Contracting States and accrues to another person who is a resident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인도네시아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만 적용)

개인

⇒ ■ 인도네시아의 개인이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국에서]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 인도네시아의 개인이 당해 역년 중 총 90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법인

⇒ ■ 인도네시아의 법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소득 조항 적용)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개인이 그의 활동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동 개인이 당해 역년 중 총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개인이 그러한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거나 상기 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의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수 있거나 상기 기간 또는 제 기

간동안 동 타방국내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서만 과세한다.
2. "전문직업적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or he is present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exceeding in the aggregate 90 days in the calendar year concerned. If he has such a fixed base or remain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aforesaid period or periods,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or is deriv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during the aforesaid period or periods.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 ● 제한세율 : 15%(주민세 포함)

● ●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액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텔레비젼이나 라디오 방송용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댓가로서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

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 7조 또는 제 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사용료를 지급하여야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사용료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 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액수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53. 일본 (JAPAN)

‖ 조약체결일 : 1998. 10. 8 ‖ 조약발효일 : 1999. 11. 22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일본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양국 정부간 합의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의하여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과세
  - ⇒ ▪ 일본 거주자인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이 어느 역년동안 US$10,0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예 → 면세
    - 아니오 →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 영화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개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그러한 소득은 그러한 활동이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따라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 자격으로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그러나, 동 소득이 양 체약국의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따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수행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다른 인에게 귀속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되는 경우에는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의정서〉

2. 협약 제17조제1항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된 인적활동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취득하는 소득은, 그러한 소득이 어느 역년동안 미화 1만불 또는 그에 상당하는 대한민국 원화 또는 일본 엔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면, 타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

Article 17

1. (a)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b) Such income shall, however,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f such activities are exercised by an individual, being a resident of the first- mentioned Contracting State, pursuant to a special programme for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two Contracting States.

2. (a)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in a Contracting State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who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b) Such income shall, however, be exempt from tax in that Contracting State if such income is derived from the activities exercised by an individual, being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pursuant to a special programme for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two Contracting States and accrues to another person who is a resident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PROTOCOL〉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a) of paragraph 1 of Article 17 of the Convention,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f such income does not exceed an aggregate amount of 10,000 United States dollars or its equivalent in Korean Won or Japanese Yen during any calendar year.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일본의 거주자인가?
  -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 ⇒ ▪ 일본의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국에서]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일본의 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이상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안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또는
   나. 당해 역년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만일 그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서 체류한다면, 타방체약국에서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과세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 변호사 · 엔지니어 · 건축가 ·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 · 문학 · 예술 · 교육과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unless:
   (a)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or
   (b) he is present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calendar year concerned. If he has such a fixed base or remain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aforesaid period or periods,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or is deriv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during the aforesaid period or periods.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 ● 제한세율 : 10%(주민세 포함)

● ●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 · 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 · 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 · 의장 · 신안 · 도면 ·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4.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체나 일방체약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5.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소프트웨어 ·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 · 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대한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 · 의장 · 신안 · 도면 ·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적용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규정이 그러한 수입으로부터 취득되는 이득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항 ·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또는 수입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사용료 또는 수입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 또는 수입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 권리 또는 정보와 관련하여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54.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조약체결일 : 1994. 3. 28 ‖ 조약발효일 : 1994. 9. 28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중국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양국 정부간 합의된 문화교류 프로그램(계획)에 의하여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 영화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간의 문화교류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s or athletes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under a plan of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Governments of both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중국의 거주자인가?
  -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 ⇒ ▪ 중국의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중국의 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에 총 183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동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는 경우(이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분에 한하여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 변호사 · 기사 · 건축사 ·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 문학 · 예술 · 교육 ·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except in one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when such income may also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if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b) if his sta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s for a period or periods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calendar year concerned;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derived from his activities perform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 ● 제한세율 : 10%(주민세 포함)

● ●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 · 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 · 특허권 · 노우하우 · 상표권 · 의장이나 신안 · 도면 · 비밀공식이나 비밀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 상업적 ·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 상업적 ·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부, 지방 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가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되는 사용 ·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55. 체코 (THE CZECH REPUBLIC)

‖ 조약체결일 : 1992. 4. 27 ‖ 조약발효일 : 1995. 3. 3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체코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양국 정부간 합의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의하여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 영화 · 라디오 또는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 체약국의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한 문화교류계획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세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s or athletes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under a special programme for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체코의 거주자인가?
  -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 ⇒ ■ 체코의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하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단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 변호사 · 기사 · 건축사 · 치과의사 또는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 문학 · 예술 ·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제한세율 : 저작권 면세, 상표권 10%(주민세 포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제3항 "가"호에 규정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 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항 "나"호에 규정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면세된다.
3.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항목들의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부터 지급되

는 금액을 말한다.

가. 특허권 · 상표권 · 의장(또는 신안) · 도면 · 비밀공식(또는 비밀공정),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나. 문학작품 · 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

4. 제1항의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왔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지방당국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동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안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조의 규정은 나중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56. 칠레 (THE REPUBLIC OF CHILE)

‖ 조약체결일 : 2002. 4. 18 ‖ 조약발효일 : 2003. 7. 25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칠레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면세규정 없음.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 · 영화 · 라디오 ·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 자격으로 수행하는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칠레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만 적용)
  - 개인
    - ⇒ ■ 칠레의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국에서]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칠레의 거주자가 어느 12개월 중 총 183일을 이상하여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법인
    - ⇒ ■ 칠레의 법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소득 조항 적용)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그 밖의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그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당해 개인이 그러한 활동의 수행을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보유하는 경우,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만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당해 개인이 어느 12월의 기간중 총183일 이상의 단일 또는 총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그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 변호사 · 엔지니어 · 건축가 ·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 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 · 문학 · 예술 ·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However, such income may also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if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purpose of performing the activities;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b) if he is pres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 month period;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derived from the activities performed in that other State may be taxed in that Stat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종속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칠레 법인(단체)의 근로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종속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칠레의 거주자가 회계연도의 개시되거나 종료되는 어느 12월 기간 중 183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예 → 과세 [한국에서]
    - 아니오 → 면세
  - ⇒ ▪ 칠레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한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될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칠레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한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될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5 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 · 임금 및 그 밖의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그 고용 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가 개시되거나 종료되는 어느 12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이나 통산기간 동안 그 타방체약국에 체류할 것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그를 대신하여 지급될 것
   다. 그 보수는 고용주가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할 것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and 19, salaries, wages and othe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 months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fiscal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 person being an employer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person being an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4)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 ● 제한세율 : 10%(주민세 포함)

● ●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적 ·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
   나.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2004.1.1 이후부터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 예술 · 과학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과 의장 · 신안 · 도면 · 비밀공식 · 공정이나 그 밖의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나 산업적 · 상

업적 ·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 산업적 · 상업적 · 과학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가 일방체약국에 사용료를 지급할 책임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그 밖의 제3자간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7. 이 조의 규정은 사용료의 지급과 관련된 권리의 창설이나 양도에 관여한 인의 주된 목적 또는 주된 목적중의 하나가 그 창설이나 양도를 통하여 이 조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7. 카자흐스탄 (THE REPUBLIC OF KAZAKHSTAN)

‖ 조약체결일 : 1997. 10. 18 ‖ 조약발효일 : 1999. 4. 9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카자흐스탄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양국 정부간 합의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의하여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 영화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으로서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다른 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 ·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 특별프로그램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s or sportsmen,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under a special programme of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both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카자흐스탄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 ⇒ ▪ 카자흐스탄의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한국에서]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다른 활동에 관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거주자가 그 활동 수행을 위하여 그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득중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관련경비를 공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 변호사 · 기사 · 건축가 ·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 · 문학 · 예술 ·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with deduction of the relevant expenses attributable to the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제한세율 : 10%(주민세 포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 · 예술 또는 학술상 작품의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 · 의장 또는 신안 · 도면 ·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상 ·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산업상 ·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 동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그가 동 일방체약국 안에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동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중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된다.

58. 캐나다 (CANADA)

‖ 조약체결일 : 2006. 9. 5 ‖ 조약발효일 : 2006. 12. 18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캐나다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양국 정부간 합의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의하여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 · 영화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배우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당해 예능인, 체육인 또는 기타 인이, 동 예능인, 동 체육인 또는 그에 관련된 인들 중 어느 누구도 지불 유예된 보수, 보너스, 수수료, 배당금, 조합분배금 또는 기타 분배금의 수취를 포함하는 동 타인의 이윤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은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 체약국 정부간 합의된 특별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어

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시킨 소득은 동 다른 쪽 체약국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person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person, from that resident'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person in that individual'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person personally,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person are exercised, unless the entertainer, sportsperson or other person establishes that neither the entertainer or the sportsperson nor persons related thereto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profits of that other person in any manner, including the receipt of deferred remuneration, bonuses, fees, dividends, partnership distributions, or other distributions.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s or sportspersons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under a special programme of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캐나다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만 적용)

개인

⇒ ■ 캐나다의 개인이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국에서]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 캐나다의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당해 회계연도 어느 12개월 내에 체제시작일이나 종료일이 포함되는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법인

⇒ ■ 캐나다의 법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소득 조항 적용)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그와 유사한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개인이 그러한 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갖지 아니하는 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한다. 만약 동 개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조의 목적상, 개인이 그러한 용역 수행을 위해 당해 회계

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동 개인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며,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 변호사 · 엔지니어 · 건축가 ·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 · 문학 · 예술 · 교육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or similar servic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individual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the services. If the individual has or had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when an individual is present in that other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such services for a period or periods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the individual shall be deemed to have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in that other State and the income that is derived from the services that are performed in that other State shall be deemed to be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 ● 제한세율 : 10%(주민세 포함)

● ●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

료 총액의 10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필름, 텔레비전 방송과 관련된 비디오테이프 또는 그 밖의 재생수단을 포함하여,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 · 의장 · 신안 · 도면 ·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 상업, 또는 학술 장비에 대한 사용 및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수취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 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사용료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동 사용료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59. 쿠웨이트 (STATE OF KUWAIT)

‖ 조약체결일 : 1998. 12. 5 ‖ 조약발효일 : 2000. 6. 13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쿠웨이트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쿠웨이트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어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공공기금 출처 :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체단체, 법정기구
    - 지원범위 : 실질적으로
    - 예 → 인적용역 검토
    - 아니오 → 한국에서 과세
  - ⇒ ▪ 쿠웨이트의 비영리단체에게 지급되는 경우
    - 예 → 인적용역 검토
    - 아니오 → 한국에서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인 경우 ⑵검토
- 종속적 인적용역인 경우 ⑶검토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 · 영화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 같은 연예인, 또는 음악가나 체육인으로서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개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자격으로 수행한 개인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다른 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그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 ·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연예인 및 체육인의 일방체약국 방문이 정치적 하부조직 · 지방자치단체나 법적 단체를 포함하는 타방체약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그들이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에 따른 보수 또는 이윤 · 급여 · 임금 및 유사한 소득에 적용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러한 활동과 관련되는 비영리단체로부터 취득되는 소득에도, 그 소득의 어떠한 부분도 그 단체의 소유주 · 구성원 또는 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지급되거나 이용되지 아니하는 한,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to remuneration or profits, salaries, wages and similar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s or sportsmen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from activiti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ir visit to that Contracting State is substantially supported from the public fund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those of any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nor to income derived by a non-profit making organization in respect of such activities provided no part of its income is payable to, or is otherwise available for the personal benefit of its proprietors, members or shareholders.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쿠웨이트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 ⇒ ▪ 쿠웨이트의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인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소득은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안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을 한도로 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은 특히 의사 · 법률가 · 기사 · 건축사 · 치과의사 및 회계사 등의 독립적 활동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하나 이들 활동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but not exclusive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종속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쿠웨이트의 법인(단체)의 근로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종속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쿠웨이트의 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에 총 183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한국에서]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쿠웨이트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한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될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쿠웨이트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한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될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5 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여 ·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것이 아닌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거기에서 취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에서 수행한 고용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동 거주자가 당해 역년중 타방체약국에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또는 총기간동안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그 고용주가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할 것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20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if all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
   a) the resident is pres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calender year concerne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4)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 ● 제한세율 : 15%(주민세 포함)

● ●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 · 의장이나 모형 · 도면 ·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 정치적 하부조직 ·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안에 그 사용료 지급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동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다른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다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조의 규정은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의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60. 크로아티아 (REPUBLIC OF CROATIA)

‖ 조약체결일 : 2002. 11. 13 ‖ 조약발효일 : 2006. 9. 15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크로아티아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양국 정부간 합의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의하여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 · 영화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그 타방국에서 면세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s or sportsmen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under a special programme of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both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크로아티아의 거주자인가?
  -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 ⇒ ▪ 크로아티아의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그 밖의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가 자기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소득에 대하여 그 타방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으나, 이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 변호사 · 엔지니어 · 건축가 ·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 · 문학 · 예술 · 교육 ·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제한세율 : 0%

※ 단, 고정사업장과 관련 있는 경우 법인의 경우 제7조 개인의 경우 제14조의 적용 받아 과세됨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적 소유자인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2.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 · 예술적 · 학술적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 신안 · 도면 ·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 또는 산업적 상업적 · 학술적 경험 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가 일방체약국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당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이들 양자와 그 밖의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61. 태국 (KINGDOM OF THAILAND)

‖ 조약체결일 : 2006. 11. 16 ‖ 조약발효일 : 2007. 6. 29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태국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태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어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공공기금 출처 :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법정기구
    - 지원 범위 : 실질적으로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연예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발생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발생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 연예인, 체육인에 의해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수행되거나 또는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에 의해 제공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어느 한쪽 체약국 방문이나 활동을 제공하는 거주자는 사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법령조직체를 포함하여 다

른 쪽 체약국의 공공 기금에 의해 실제적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해당소득은 연예인, 체육인 및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person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perso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perso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perso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person are exercis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activities performed in a Contracting State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person, or provid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f the visit to that Contracting State or the resident providing the activities, as the case may be, is substantially supported by public fund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any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In such a case the incom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State of which the entertainer, sportsperson or the enterprise is a resident.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태국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만 적용)

개인

[한국에서]

⇒ ▪ 태국의 개인이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 태국의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 중 183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당해 회계연도 어느 12개월 내에 체제시작일이나 종료일이 포함되는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 한국의 거주자에 의해 지급되거나, 한국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수가 US$12,000이상일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법인

⇒ ▪ 태국의 법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소득 조항 적용)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인 성격의 여타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러한 소득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과세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 어느 한쪽 체약국 내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가 그의 동수행을 위하여 다른 쪽 체약국내에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하는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한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다른 쪽 체약국에서의 체류가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으로 총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 다른 쪽 체약국내에서 수행한 그의 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 한다.
   다. 다른 쪽 체약국내에서 그의 활동에 대한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가 지급하거나 다른 쪽 체약국내에 위치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로부터 지급되고, 회계연도 내에 미화 12,000 달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한국 원화 또는 타이 바트화를 넘을 경우, 그렇게 얻어진 보수에 대해서만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except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when such income may also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if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if his sta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s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derived from his activities performed in that other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or
   (c) if the remuneration for his activiti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s paid by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or is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Contracting State, and exceeds in the fiscal year 12,000 United States dollars or its equivalent in Korean won or Thai baht;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 ● 제한세율 : 저작권 5%, 상표권 10%(주민세 포함)

● ●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제3항 가목에 기술된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
   나. 제3항 나목에 기술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다. 제3항 다목에 기술된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소프트웨어와 활동사진,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테이프 또는 기타 복제 수단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과학작품의 사용 또는 사용권
   나.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다. 산업상, 상업상, 과학적 장비의 사용 및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쪽 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시설로부터 동 다른 쪽 체약국 내에서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는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법령조직체이거나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가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인이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어느 한쪽 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사용료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동 사용료 금액이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62. 터어키 (REPUBLIC OF TURKEY)

‖ 조약체결일 : 1983. 12. 24 ‖ 조약발효일 : 1986. 3. 27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터어키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터어키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어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공공기금 출처 :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법정기구
    - 지원범위 : 실질적으로
    - [한국에서] 예 → 면세 / 아니오 → 과세
  - ⇒ ▪ 터어키의 비영리단체에게 지급되는 경우
    - 예 → 면세 / 아니오 →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 14조 및 제 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그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1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동인의 그와 같은 자격으로 수행하는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동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고 제 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 7조, 제 14조 및 제 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은 동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일방 체약국 방문이 타방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 공공단체 또는 법적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일방 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과, 비영리 조직이 그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얻는 소득의 어떤 부분이 당해 조직의 소유자, 구성원 또는 주주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이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비영리조직의 소득은 일방 체약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income derived from activities performed in a Contracting State by entertainers or athletes when their visit to that State is substantially supported from the public fund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those of any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statuary body there of, and income derived by a non-profit making organization in respect of such activities, provided no part of its income is payable to, or is otherwise available for the personal benefit of its proprietors, members or shareholders, shall not be taxed in the first mentioned Contracting State.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터어키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 ⇒ ■ 터어키의 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에 총 183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터어키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한국 거주자에서 지급되는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터어키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한국의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전문 직업적 용역이나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활동이 타방 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그 활동이 타방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된 소득은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전문 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활동과 관련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역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

에 체재하고,
나. 보수가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의해서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보수가 동인이 타방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해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such activities are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activities are exercised in the other State, income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 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calendar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 person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said person has, in the other State.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 ● 제한세율 : 10%(주민세 포함)

● ●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림과 라디오, 텔레비젼용 녹음물을 포함한 문화상, 예술

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또는 산업적, 상업적,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또는 산업적, 상업적,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 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동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 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 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 공공단체 또는 동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일방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 체약국내에 사용료를 발생시킨 권리 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동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 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63. 튀니시아 (REPUBLIC OF TUNISIA)

‖ 조약체결일 : 1988. 9. 27 ‖ 조약발효일 : 1988. 11. 25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튀니시아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튀니시아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어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공공기금 출처 :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지원범위 : 전적으로, 실질적으로
    - 예 → 인적용역 검토
    - 아니오 → 한국에서 과세
  - ⇒ ■ 튀니시아의 비영리단체에게 지급되는 경우
    - 예 → 인적용역 검토
    - 아니오 → 한국에서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인 경우 (2)검토
- 종속적 인적용역인 경우 (3)검토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 14조 및 제 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실행되는 그의 그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의 그러한 자격으로 실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 7조, 제 14조 및 제 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은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본 조의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일방체약국 방문이, 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타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 동 규정은 타방체약국의 비영리기관 또는 그 구성원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 행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들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if the visit to a Contracting State of the entertainer or the athlete is supported, wholly or substantially, from the public fund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a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of that other State, nor shall they apply to income from activities carried on in a Contracting State by non-profit making organization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y their members, except where the latter are acting on their own behalf,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튀니시아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 ⇒ ▪ 튀니시아의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되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동국에서만 과세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당해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단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종속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튀니시아 법인(단체)의 근로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종속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튀니시아의 거주자가 당해 회계연도 중에 총 183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튀니시아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한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될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튀니시아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한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될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5 조 종속적 인적 용역

1. 제 16조, 제 18조, 제 19조 및 제 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실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다만,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년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국내에 체재하며, 그리고
   나. 그 보수가 타방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그리고
   다. 그 보수가 타방 체약국내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Subject to provisions of Articles 16,18, 19 and20 salaries, wages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b) the remuneration is by, or on behalf of, an who is not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4)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제한세율 : 15%(주민세 포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또한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 사용료 액수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영화 필림 및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림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댓가, 또는 농업적,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댓가,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댓가, 또는 기술적 또는 경제적 연구의 댓가, 또는 기술지원의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며, 또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 7조 또는 제 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체약국내에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사용료가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근거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액수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마지막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된다.

64. 파키스탄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 조약체결일 : 1987. 4. 13 ‖ 조약발효일 : 1987. 10. 20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파키스탄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파키스탄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어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공공기금 출처 :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법정기구
    - – 지원범위 : 실질적으로
    - 예 → 인적용역 검토
    - 아니오 → 한국에서 과세
  - ⇒ ■ 파키스탄의 비영리단체에게 지급되는 경우
    - 예 → 인적용역 검토
    - 아니오 → 한국에서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인 경우 (2)검토
- 종속적 인적용역인 경우 (3)검토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 영화,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예능인 또는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그러한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의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하는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동 연예인이나 체육인 자신에게 발생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발생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의 방문이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단체의 공공기금을 포함한 동 타방체약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동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얻는 보수 또는 이익, 급료, 임금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러한 활동과 관련한 비영리단체의 소득에 대하여 동 소득의 어떠한 부분이 동 단체의 소유자, 구성원 또는 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지급되거나 달리 이용되지 아니하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to remuneration or profits, salaries, wages and similar income derived from activities performed in a Contracting State by entertainers or athletes if their visit to that State is substantially supported from the public fund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those of any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nor to income derived by a non-profit making organization in respect of such activities provided no part of its income is payable to, or is otherwise available for the personal benefit of its proprietors, members or shareholders.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파키스탄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만 적용)

개인

⇒ ■ 파키스탄의 개인이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 ■ 파키스탄의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 중에 총 183일 이상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 한국 거주자에 의해 지급되거나 한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로, 특히 회계연도 중 US$10,000을 초과하는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법인

⇒ ■ 파키스탄의 법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소득 조항 적용)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한 소득은 타방체약국에

서도 과세될 수 있다.

가. 동 개인이 자신의 활동 수행상 그 타방체약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동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 중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에 걸쳐 총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제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동 소득 중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다.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보수가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로써 과세년도중 10,000미합중국달러 또는 한국이나 파키스탄의 통화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

2. "전문직업적인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사,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except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when such income may also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if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if his sta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s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derived from his activities performed in that other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or

   c) if the remuneration for his activiti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s paid by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or is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Contracting State and exceeds in the fiscal year US $10,000 or its equivalent in Korean or Pakistan currency.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종속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파키스탄 법인(단체)의 근로자인가?
  - ⇓ 예
  - ⇒ 아니오 → 과세
- '종속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파키스탄의 거주자가 당해 과세연도 중에 총 183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파키스탄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한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될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파키스탄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한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될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5 조 종속적 인적 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 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과세연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리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내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20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4)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 ● 제한세율 : 10%(주민세 포함)

● ●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텔레비젼이나 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나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모든 기술, 경영 또는 자문의 용역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

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이 되는 권리, 재산 또는 용역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 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동 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한 사용료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정보 또는 용역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동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65. 파푸아뉴기니아 (THE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 조약체결일 : 1996. 11. 23 ‖ 조약발효일 : 1998. 4. 21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파푸아뉴기니아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양국 정부간 합의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의하여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한국에서]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양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 특별프로그램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s or sportsmen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under a special programme of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both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파푸아뉴기니아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만 적용)

개인

- ⇒ ▪ 파푸아뉴기니아의 개인이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과세 [한국에서]
  - 아니오 → 면세
- ⇒ ▪ 파푸아뉴기니아의 개인이 어느 365일 중 한국에서의 인적용역소득이 US$10,000을 초과하는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파푸아뉴기니아의 개인이 어느 365일 중 6개월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법인

- ⇒ ▪ 파푸아뉴기니아의 법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소득 조항 적용)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닌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타방체약국 안에서 개인이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 개인이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경우, 당해 소득중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서 이루어진 활동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로부터 개인이 취득하고 어느 365일의 기간중 총계 10,000달러 내지 파푸아뉴기니 통화 또는 한국 통화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은 타방체약국내의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다. 타방체약국에서 어느 개인이 365일의 기간중 6개월을 초과하여 체재하는 경우에 타방체약국내의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건축사 치과의사 또는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과 기술적 경영적 자문적 성질의 용역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교수 경영 또는 자문 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a)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regularly available to the individual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the individual's activities, in which case, so much of the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activities exercised from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 income is derived by the individual from a resident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and exceeds an amount of US$10,000 or its equivalent in Papua New Guinean currency or Korean currency in any 365-day period, in which case so much of the income as is derived from the activitie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State; or
   (c) an individual's stay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exceeds 6 months in any 365-day period, in which case so much of the income as is derived from activities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Stat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teaching, technical, managerial, or consultancy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and any services of a technical, managerial or consultancy nature.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 ● 제한세율 : 10%(주민세 포함)

● ●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테이프를 포함하여 문학 예술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설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제1항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6. 이 조에서 사용료의 지급 또는 사용료의 지급금에 대한 언급은 지불해야 할 사용료를 포함한다.

66. 포르투갈 (THE PORTUGESE REPUBLIC)

‖ 조약체결일 : 1996. 1. 26 ‖ 조약발효일 : 1997. 12. 21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포르투갈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양국 정부간 합의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의하여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예 — 인적용역 검토
    - 아니오 — 한국에서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연예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 영화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 ·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 체약국의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한 문화교류계획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ma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man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s or sportsmen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ctivitie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under a special programme of cultural exchange agreed up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both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포르투갈의 거주자인가?
  -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 ⇒ ▪ 포르투갈의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포르투갈의 거주자가 당해 회계연도 중에 총 183일 이상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 당해 회계연도 어느 12개월 내에 체제시작일이나 종료일이 포함되는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여타 독립적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당해 회계년 도중 개시 또는 종료하는 어느 12월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 변호사 · 기사 · 건축사 ·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 문학 · 예술 · 교육 ·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However,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such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is to say:
   a) If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or
   b) If his sta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s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 ● 제한세율 : 10%(주민세 포함)

● ●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 · 예술작품 또는 학술 작품(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 · 의장 또는 신안 · 도면 ·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 상업적 ·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 상업적 ·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사용료"에는 이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저작권, 상품 또는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권관련 기술지원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지급금이 포함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

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치적 · 행정적 하부조직, 지방 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가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 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67. 폴랜드 (THE REPUBLIC OF POLAND)

‖ 조약체결일 : 1991. 6. 21 ‖ 조약발효일 : 1992. 2. 21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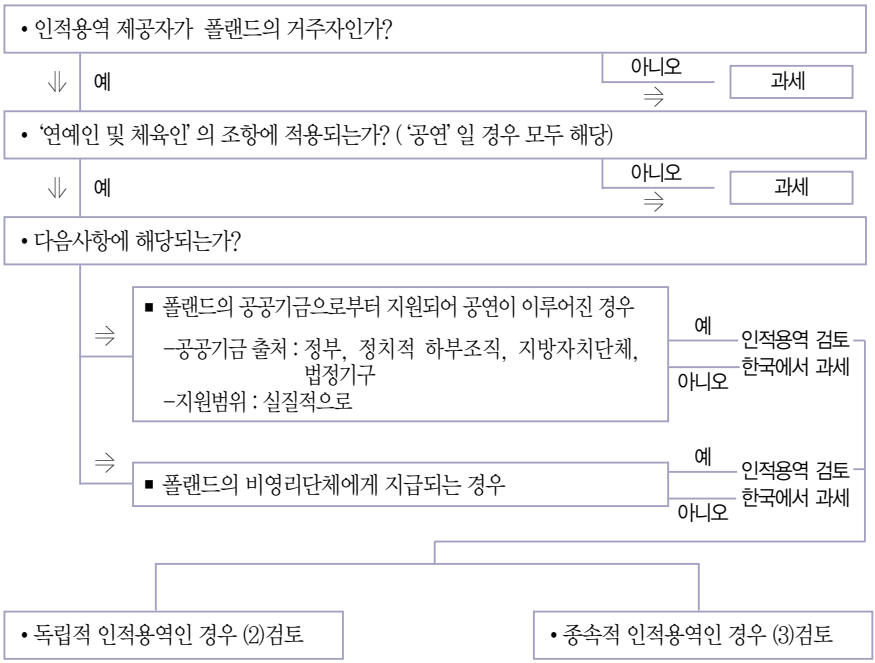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의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은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일방체약국 방문이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법적 단체를 포함하는 타방체약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들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 또는 이윤.급료.임금 및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그러한 활동에 관하여 비영리기관이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동 소득의 어떠한 부분도 그것의 소유자, 회원 또는 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지급되거나 달리 이용되지 아니하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to remuneration or profits, salaries, wages and similar income derived from activities performed in a Contracting State by entertainers or athletes if their visit to that State is substantially supported from the public fund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those of any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nor to income derived by a non-profit making organization in respect of such activities provided no part of its income is payable to, or is otherwise available for the personal benefit of its proprietors, members or shareholders.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폴랜드의 거주자인가?
  -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 ⇒ ■ 폴랜드의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한국에서]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되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당해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단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사,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종속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폴랜드 법인(단체)의 근로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종속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폴랜드의 거주자가 당 회계연도 중에 총 183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폴랜드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한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될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폴랜드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한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될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5 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다만,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

여 발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년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20 and 21 salaries,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4)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 ● 제한세율 : 10%(주민세 포함)

● ●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또한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초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체약국안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68. 프랑스 (FRANCE)

‖ 조약체결일 : 1979. 6. 19 ‖ 조약발효일 : 1981. 2. 1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프랑스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프랑스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어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공공기금 출처 :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법정기구
    - –지원범위 : 실질적으로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과세
  - ⇒ ■ 프랑스의 비영리단체에게 지원되는 경우
    - 예 → 면세
    - 아니오 →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국의 거주자로서 연극, 영화,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운동가에 의하여 타방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이러한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운동가의 이러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이나 운동가에게 발생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발생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

인 또는 운동가의 활동이 수행되는 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예인과 운동가가 일방국에서 그들의 이러한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보수나 이윤 및 임금 급료와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 동 일방국에 대한 그들의 방문이 동 타방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법적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국에서 수행되는 연예인과 운동가의 이러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이나 운동가 자신에게 발생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발생되는 경우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인이 타방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법적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이거나 동 인이 동 타방국의 비영리단체인 경우, 그 타방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as such of an entertainer or athlete accrues not to that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s or profits, and wages, salaries and other similar income derived by entertainers and athletes from their personal activities as such in a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State if their visit to the first mentioned State is supported substantially from the public funds of that other State, one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or of a statutory body thereof.
4.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as such of entertainers and athletes in a State accrues not to that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that incom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State if this person is supported substantially from the public funds of that other State ,one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or of a statutory body thereof, or if this person is a non profit organization of that other State.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프랑스의 거주자인가?
  - ⇓ 예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 예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 ⇒ ▪ 프랑스의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면세
  - ⇒ ▪ 프랑스의 거주자가 당해 회계연도 중에 총 183일 이상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예 과세
    - 아니오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러한 소득이 또한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그의 소득만을 과세할 수 있다. 또는
   나. 타방체약국에서의 그의 체재가 당해 회계연도중 총 183일에 달하거나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만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 변호사 · 기사 · 건축가 ·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과 특히 독립적인 과학 · 문학 · 예술 ·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except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when such income may also be taxed in the other State.
   (a) If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State ; or
   (b) If his stay in the other State is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derived from his activities performed in that other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 ● 제한세율 : 10%(주민세 포함)

● ●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국에서 발생하여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또한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2 · 2 · 17〉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름과 방송 및 텔레비전용으로 녹음된 작품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한
   나. 특허권 · 상표 · 의장이나 모델 · 도면 ·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 ·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 ·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4. 일방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국에서 전문직업적 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

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국의 정부자신 · 정치적 하부조직 · 지방공공단체 · 법적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69. 핀랜드 (THE REPUBLIC OF FINLAND)

‖ 조약체결일 : 1979. 2. 8 ‖ 조약발효일 : 1981. 12. 23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핀랜드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핀랜드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어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공공기금 출처 :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 지원범위 : 실질적으로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과세
  - ⇒ ▪ 핀랜드의 비영리단체에게 지급되는 경우
    - 예 → 면세
    - 아니오 →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배우나 음악가 등의 연예인과 운동가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이와 같은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운동가의 자격으로서 행한 인적활동에 관련된 소득이 동 연예인 또는 운동가에게 발생되지 않고 제3자에게 발생될 경우에는, 그 소득은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활동이 수행된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이나 운동가에 의하여 그러한 자격으로서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된 인적 용역과 관련한 소득은 동 소득이 연예인이나 운동가 자신에게 발생되든 안 되든 간에 만약 그 타방체약국에 대한 방문이 상기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공적공동체의 공공기금에서 실질적으로 지원되거나 또는 소득의 수익자가 동 일방체약국의 비영리단체인 경우에는 본 조제1항 및 2항의 규정과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r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in a Contracting State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being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such, whether or not that income accures to that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and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State if his visit to the first-mentioned State is supported substantially from public funds of the other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public community thereof, or if the recipient of the income is a non-profit making organization of the other State.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핀랜드의 거주자인가?
  -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 ⇒ ▪ 핀랜드의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자유직업적 용역이나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다른 활동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동 거주자가 그 활동 수행의 목적상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되는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에 가지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동 거주자가 그와 같은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자유직업적인 용역"이라 함은 의사, 법률가,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와 회계사등의 독립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a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c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제한세율 : 10%(주민세 포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본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름과 텔리비죤 및 라디오 방영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여 문학,예술 및 학술작품의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나)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다) 산업상이나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한 타방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고정시설로부터 독립적 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상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나 제14조의 규정이 각각 경우에 따라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 공공단체 또는 공적공동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동 일방체약국 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있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쌍방과 제3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액수가 그 사용료

가 지급된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취인 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 중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정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70. 필리핀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조약체결일 : 1984. 2. 21 ‖ 조약발효일 : 1986. 11. 9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필리핀의 거주자인가?
  -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필리핀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어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공공기금 출처 :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 지원범위 : 실질적으로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과세
  - ⇒ ■ 필리핀의 비영리단체에게 지급되는 경우
    - 예 → 면세
    - 아니오 →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독립적인적용역) 및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나 텔레비전 출연자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그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에 의하여 그와 같은 자격으로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이나 체육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소득은 제7조(사업소득), 제14조(독립적인 적용역) 및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예인 또는 체육인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에서 그의 그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되는 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 대한 그의 방문이 동 타방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4.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그러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인이 타방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경우이거나 또는 동인이 동 타방국의 비영리단체인 경우 그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and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theater,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s,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at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Business Profits),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and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income deriv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in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his visit to the first-mentioned State is supported substantially from the public funds of that other State or of one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4.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as such of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a Contracting State accrues not to that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is person is supported substantially from the public funds of that other State or of one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or is this person is a non-profit organization of that other State.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필리핀의 거주자인가?
  -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 ⇒ ▪ 필리핀의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필리핀의 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에 총 120일 이상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문 직업적 용역이나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으로 발생되는 소득은 동 일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동 타방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될 수 있다.
   나. 동 타방국에 1역년중 120일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체재할 때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법률가,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등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활동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in that State. However, such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if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at other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but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or

b) if his stay in that other State is for a period or periods aggregating 120 days or more in the calendar year.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 ● 제한세율 : 15%(주민세 별도 / 16.5%)

● ●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수익적 소유자인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본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리핀의 거주자이며 투자위원회에 등록되어 있고 필리핀의 투자촉진법상 투자장려 분야에 종사하는 법인에 의하여 수익적 소유자인 한국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필리핀에서 부과될 세액은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4. 본조에서 사용된 "사용료"라 함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나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하며 영화필름, 텔레비젼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필름 또는 시청각 테이프상의 작품, 또는 라디오 방송에 사용되는 테이프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포함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국내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사업소득) 또는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6.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한 사용료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동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조의 제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본 협약의 기타 제반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71. 헝가리 (THE HUNGARIAN PEOPLE'S REPUBLIC)

‖ 조약체결일 : 1989. 3. 29 ‖ 조약발효일 : 1990. 4. 1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헝가리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헝가리 또는 한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어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공공기금 출처 : 정부
    - 지원범위 : 상당부분
    - [한국에서] 예 → 면세 / 아니오 → 과세
  - ⇒ ▪ 양국 정부간 합의된 문화교류 협정에 의하여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예 → 면세 / 아니오 →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의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타인이 동 연예인 또는 체육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되고 있으면,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은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당해 활동 수행지국 또는 타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상당한 부분이 지원되거나 또는 동 활동이 체약국간의 문화협정 또는 약정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 본 조에 언급된 소득은 동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면세된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if that person is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led by the entertainer or athlete.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income mentioned in this Articl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y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is exercised provided that this activity is supported in a considerable part out of public fund of this State or of the other State, or the activity is exercised under a cultural agreement or arrangement between the Contracting State.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헝가리의 거주자인가?
  -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 ⇒ ▪ 헝가리의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한국에서]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되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당해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단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 의사 및 회계상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제한세율 : 0%

※ 단, 고정사업장과 관련 있는 경우 법인의 경우 제7조 개인의 경우 제14조의 적용 받아 과세됨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데이프를 포함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의장 또는 사용권 그리고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이 지급금을 의미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4.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72. 호주 (AUSTRALIA)

‖ 조약체결일 : 1982. 7. 12 ‖ 조약발효일 : 1984. 1. 1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호주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호주나 한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어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공공기금 출처 :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 –지원범위 : 실질적으로
    - 예 → [한국에서] 면세
    - 아니오 → 과세
  - ⇒ ■ 호주의 비영리단체에게 지급되는 경우
    - 예 → 면세
    - 아니오 → 과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1. 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능인(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출연자 또는 음악가 또는 체육인과 같은)으로서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된 그와 같은 예능인으로서의 동인의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예능인이 동인의 그와 같은 자격으로 제공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동 예능인 자신에게 발생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발생하는 경우, 동 소득은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예능인의 활동이 행하여진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능인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에서 그와 같은 예능인으로서의 동인의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인의 동 일방체약국에의 방문이 동 타방체약국의 또는 동국의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중 하나의 공적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의 예능인의 활동과 같은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동 예능인 자신에게 발생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발생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는 동인이 동 타방체약국의 또는 동국의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중 하나의 공적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또는 동인이 동 타방체약국의 비영리기관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7 Entertainer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are exercised.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income derived by an entertainer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in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his visit to the first-mentioned State is supported substantially from the public funds of that other State or of one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4.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as such of an entertainer in a Contracting State accrues not to that entertainer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at person is supported substantially from the public funds of that other State or of one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or if that person is a non-profit organization of that other State.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호주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만 적용)
  - 개인 ⇒
    - ▪ 호주의 개인이 한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 법인 ⇒
    - ▪ 호주의 법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소득 조항 적용)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자유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 활동에 관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동인이 타방체약국에 있어서 동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을 위하여 동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동인이 그와 같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동 소득중 동 고정시설로부터 행하여진 활동에 귀속시킬 수 있는 정도의 분에만 한정된다.
2. "자유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계리사의 독립적 활동의 행사에 있어서 뿐 아니라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의 독립적 활동의 영위에 있어서 수행되는 용역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independent activities of a similar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f he has such a fixed base, the incom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it as is attributable to activities exercised from that fixed bas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services performed in the exercise of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in the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 ● 제한세율 : 15%(주민세 포함)

● ●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권을 가지는 사용료로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한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또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으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사용료의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정기적이든 아니든 그리고 금액이 계산되거나 지정되거나에 관계없이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지급금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가. 저작권, 특허권, 설계 또는 모형,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 상표 또는 기타 유사한 재산이나 재산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나.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다. 과학적, 기술적, 산업적 또는 상업적 지식이나 정보의 제공
   라. "가"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재산이나 재산권, "나"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장비 또는 "다"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지식이나 정보에 대하여 보조적 또는 종속적인 또한 동 재산, 장비 또는 정보등의 적용 또는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제공되는 조력의 제공
   마. 다음의 사용 또는 사용권
      (1) 영화필름
      (2) 텔레비전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필름 또는 비데오테이프 또는

(3) 라디오 방송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테이프 또는

바. 본항에 언급된 재산 또는 재산권의 사용에 관한 전적인 또는 부분적인 억제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익권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의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사용료가 지불된 원인인 재산권이다.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유효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각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지불인이 일방체약국 자체이거나 또는 동 체약국의 정치적 또는 행정적 하부조직이거나 또는 동 체약국의 지방당국이거나 또는 제4조제1항으로 인하여,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일 때에는 동 사용료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동 사용료를 지불하는 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인이 일방체약국내의 또는 양 체약국외에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발생한 것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동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동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6. 사용료 지불인과 사용료에 대한 수익적 권한을 가진 인 사이의 또는 그들 양자와 제3자 사이의 특별한 관계때문에 지불된 사용료의 액수가 동 사용료가 지불된 목적을 고려하여 지불인과 그러한 관계없이 그러한 권한을 갖게된 인에 의하여 합의되었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본조의 규정은 후자의 액수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지불된 사용료의 액수의 초과분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대상으로 존속하나 이 협약의 기타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73. 휘지 (THE REPUBLIC OF FIJI)

‖ 조약체결일 : 1994. 9. 19 ‖ 조약발효일 : 1995. 2. 17

(1) 공연료(performance fee)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휘지의 거주자인가?
  - 아니오 ⇒ 과세
  - ⇓ 예
- '연예인 및 체육인'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공연' 일 경우 모두 해당)
  - 아니오 ⇒ 과세
  - ⇓ 예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휘지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어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 공공기금 출처 :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법정기구
    - 지원범위 : 실질적으로
    - 예 → 인적용역 검토
    - 아니오 → 한국에서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인 경우 (2)검토
- 종속적 인적용역인 경우 (3)검토

관련 조항 전문

제 17 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 영화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

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 ·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의 방문이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와 관련된 법적단체의 공공기금을 포함한 동 타방체약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경우,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동 일방 체약국으로부터 취득하는 보수 또는 이윤 · 급료 · 임금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 17 Entertainers and Athlete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to remuneration or profits, salaries, wages and similar income derived from activities performed in a Contracting State by entertainers or athletes, if their visit to that State is substantially supported from the public fund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those of any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2) 독립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휘지의 거주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독립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예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 등에 관한 독립적 활동 제공 시)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개인, 법인 모두 적용)
  - ⇒ ▪ 휘지의 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휘지의 거주자가 소득이 발생한 년도 또는 전년 중에 총 183일 이상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한국의 거주자이거나 한국에 고정사업장 혹은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총 휘지달러 10,000을 초과하는 경우
    - 소득 : 휘지거주가 청구한 비용, 지급된 대가, 혜택 등 총 비용 해당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단, 고정사업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만 과세함.

관련 조항 전문

제 14 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관리용역을 포함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유사한 성격의 기타 독립적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정규적 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

지고 있는 경우 (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동 거주자가 당해 연도의 전년 1년 또는 소득발생 연도중에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 안에 체재하는 경우 (이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분에 한하여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다.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비용상환금액, 대체지불 또는 모든 형태의 이익증대 가치포함)가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동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의 과세소득결정시 공제되는 경우로서, 연간 10,000 휘지달러 또는 한국통화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내과의사 · 외과의사 · 변호사 · 기사 · 건축사 ·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 문학 · 예술 ·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including management services or other independent activities of a similar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except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when such income may also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if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and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b) if his sta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s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relevant "previous year" or "year of income", as the case may be, and,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derived from his activities performed in that other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or

(c) if, in a year of income, he derives gross remuneration (including expenses reimbursed to him or borne on his behalf or the value of any benefit), in respect of his activiti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is paid by a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or is deductible in determining taxabl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Contracting State and that exceeds ten thousand Fijian dollars or its equivalent in Korea.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surgeo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3) 종속적 인적용역 사례비

과세 판단흐름

- 인적용역 제공자가 휘지 법인(단체)의 근로자인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종속적 인적용역' 의 조항에 적용되는가?
  - 예 ⇓
  - 아니오 ⇒ 과세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가?
  - ⇒ ▪ 휘지의 거주자가 당 회계연도 중에 총 183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 예 → [한국에서]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휘지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한국의 비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될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 ⇒ ▪ 휘지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이 한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될 경우
    - 예 → 과세
    - 아니오 → 면세

관련 조항 전문

제 15 조 종속적 인적 용역

1. 제16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단,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년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20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at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4) 사용료(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상표권)

● ● ● 제한세율 : 10%(주민세 포함)

● ● ● 관련 조항 전문

제 12 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 · 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

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 · 의장(또는 신안) · 도면 · 비밀공식(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 상업적 ·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 상업적 ·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 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가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